지역법제 Issue Paper 16-16-②

미국의 영유아 학대방지를 위한 입법적 동향

윤 인 숙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지역법제 Issue Paper 16-16-②

미국의 영유아 학대방지를 위한 입법적 동향

윤 인 숙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미국의 영유아 학대방지를 위한 입법적 동향

Legislative Issues on Child Abuse Prevention in USA

연구자 : 윤인숙(부연구위원)
Yoon, Insook

2016. 11. 30.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목 차

제 1 장 연구의 목적 ····· 5

제 2 장 미국 영·유아 아동학대 현황 ····· 7

Ⅰ. 아동학대 현황 ····· 7

Ⅱ. 아동학대예방 관련 정책 ····· 9

1. 신고의무제도 ····· 9

2.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아동학대예방시스템 구축 ····· 10

제 3 장 아동학대 법제 분석 ····· 13

Ⅰ. 아동학대 법제 개관 ····· 13

1. 개 관 ····· 13

2. 아동학대의 정의 ····· 14

Ⅱ. 주요 법률 분석 ····· 15

1. 아동학대 예방 및 치유법 ····· 15

2. 1992년 아동학대, 가정폭력, 입양 및 가족 서비스법 개요 ··· 18

3. 1996년 아동학대 예방 및 치유법(CAPTA) 개정안 ····· 18

제 4 장 아동학대예방 제도 ····· 21

Ⅰ. 아동학대신고제도 ····· 21

1. 신고의무자 규정 ····· 21

2. 신고의무 불이행시 제재규정 및 면책규정 ····· 23

3. 신고 및 조사절차 ····· 24

4. 미국의 각 주별 신고 기준 및 절차 ····· 25

Ⅱ. 아동보호서비스를 통한 아동학대예방 ····· 29
1. 연방정부의 아동보호서비스 행정체계 ····· 29
2. 주정부 아동보호 서비스 행정체계 ····· 31

제 5 장 시사점 ····· 35
Ⅰ. 아동학대 신고의무규정의 구체화 ····· 35
Ⅱ. 공공・민간 기관의 아동학대예방 협조 ····· 36

참 고 문 헌 ····· 39

제 1 장 연구의 목적

○ 최근 잇달아 발생했던 비극적인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에 대한 정책적 개입과 대응체계의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영·유아의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음.

○ CCTV의 의무적 설치는 교사의 프라이버시 등을 이유로 그 동안 통과여부가 불투명하였으나, 아동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고조되면서 법안이 통과되었음.

○ 하지만 CCTV 미설치 혹은 관리 준수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하게 되어 있는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며 CCTV 설치 이외의 아동학대 예방 제도에 대한 논의 및 도입이 요구되고 있음.

○ 미국은 1977년 '아동학대 예방 및 치유법' 제정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 규정 도입, 아동학대 조사 및 예방 정책 수립 등 연방차원의 법제도 정비를 본격화하는 한편 주정부에 대해서도 관련 연방법 준수를 지원금 교부 조건으로 내세움.

○ 이후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쳐 미국은 아동학대 개념 및 범주 확대, 아동학대 조사 절차 매뉴얼 마련하였으며 학대아동 보호 등 아동보호서비스를 담당하는 연방정부부처인 아동보호서비

스(Child Protective Service)를 설치하는 등 법적·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 아동학대 예방 앞선 미국의 법제 및 정책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시사점을 찾고자 함.

제 2 장 미국 영·유아 아동학대 현황

Ⅰ. 아동학대 현황

○ 미국 연방 보건부 아동국은 매년 관련 기관에 신고 된 아동학대의 현황에 관한 연간보고서를 발간하고 그에 관한 데이터 등을 공개하고 있음.[1)]

○ 2013년도에 아동학대로 신고 되어 조사가 진행되거나 대안적인 조치가 취해진 신고 건수는 미국 전역에 걸쳐 3,188,085건 이며 이는 2009년도 3,003,136건에 비하여 약 4.6% 증가한 수치임.[2)]

○ 신고 사건 중 실제로 아동학대의 피해자로 취급된 사건 수는 2013년 기준으로 678,932건이며 이를 아동 인구 1,000명 당 피해 아동 수로 환산하면 9.1명임.

○ 피해 아동의 연령별 분포 현황은 <그림 1>과 같은데 연령이 1세, 2세인 경우가 가장 많으며 피해 아동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자가 330,714건, 여자 아동이 345,633건으로 여자 아동의 수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 됨.

---

1) http://www.acf.hhs.gov/programs/cb/focus-areas/child-abuse-neglect 참조

2)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Administration on Children, Youth and Families, Children's Bureau. (2015). Child maltreatment 2013. (이하, 'Child maltreatment 2013'이라고 함). 위 보고서 29내지 53면에 제시된 표 등을 토대로 설명함.

<그림 1> 2013년 미국 연령별 아동학대 현황[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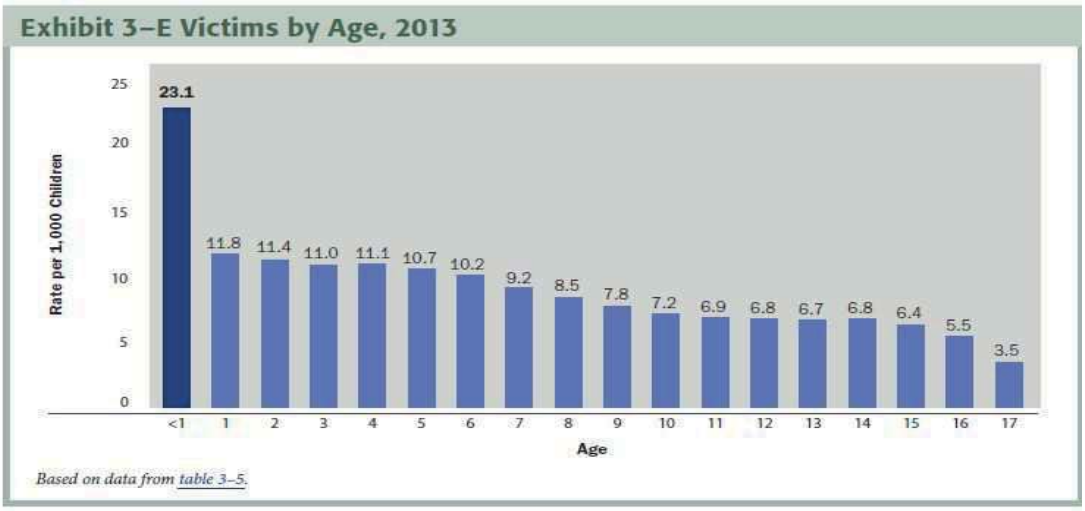

○ 아동학대의 유형별로 보면 총 피해 유형 합계 865,643건 중, 의료치료해태(Medical neglect)가 15,450건이고, 무관심이 539,67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기타 67,979건, 육체적 학대 122,157건, 심리적 부당대우 59,236건, 성적 학대 60,956건임.

○ 가해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부모 쌍방 및 일방, 부모와 부모가 아닌 사람과 함께 가해한 경우 등 포함)가 91%를 차지함.

○ Child maltreatment 2013 보고서는 아동학대 중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별도의 장으로 다루고 있는데 2013년에 미국 전역에서 아동학대로 1,520명의 아동이 사망하였음.

○ 이는 2009년 대비하여 12.7% 감소한 수치이며 2013년 사망 건수 중 1,217건이 데이터로 세밀하게 분석이 가능한 건수인데, 학대유형을 보면 의료치료해태가 105건, 무관심이 869건, 기타 282건,

3) http://www.acf.hhs.gov/programs/cb/focus-areas/child-abuse-neglect 참조.

육체적 학대 569건, 심리적 학대 22건, 성적 학대 12건, 원인불명 1건임.

○ 연령별로 보면 피해아동이 1살인 경우 46.5%, 2살인 경우가 17.0%로 압도적이며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로 보면 부모가 가해자인 경우가 78.9%에 이름.

Ⅱ. 아동학대예방 관련 정책

1. 신고의무제도

○ 아동학대 및 이의 예방 정책·제도와 관련하여 가장 특징적인 것은 신고의무법이 있다는 것임. 미국의 아동학대 신고의무법은 전문가나 특정인이 학대를 발견했을 때에는 신고할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위반 시 벌칙이 따르게 되어 있음.

○ 미국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경우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보호조치는 주정부의 공공기관에서 담당하고, 상담 및 치료 등의 서비스는 전문 민간기관 및 이와 직접 관련 있는 지역협의체가 담당함.

○ 신고는 일반인이나 신고의무자가 24시간 개방되어 있는 긴급전화나 사무실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함으로써 개입이 시작됨.

○ 신고가 접수되면 응급의 경우에 는 24-48시간 이내, 응급이 아닐 경우에는 4-10일 사이에 조사가 실시되며 조사담당자는 주로 아동보호서비스(CPS: Child Protective Service) 담당자임. 신고접수 30일 이내에 아동학대 여부를 판정하도록 하고 있음.[4)]

4) 노충래 외 2인, 아동학대 조기발견체계 구축을 통한 아동학대 발생방지 방안 마련, 법무부 연구용역과제, 2012년

○ 신고 된 내용이 아동학대나 방임으로 입증되면 개입이 시작되는데, 개입은 ①지속적 아동보호서비스, ②집중적 가족보존서비스, ③가정외보호로의 배치 중에서 결정됨.

○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보호조치는 주정부의공공기관에서 담당하고, 상담 및 치료 등의 서비스는 전문 민간기관 및 이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지역협의체(Community Collaborative)'가 담당함.

○ CPS 담당자는 신고자를 면담하고 신고 된 가족의 기록을 살펴보는 등 사전정보를 수집한 후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과 부모를 각기 면접하고 신고접수 후 30일 이내에 아동학대 여부를 판정하도록 하고 있음.

2.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아동학대예방시스템 구축

○ 미국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경우,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보호조치는 주정부의 공공기관에서 담당하고, 상담 및 치료 등의 서비스는 전문 민간기관 및 이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지역협의체(Community Collaborative)'가 담당함.

○ 시설보호보다 가정보호를 선호하는 미국에서는 학대로 인해 부모로부터 격리되어 보호를 받아야 할 아동이 발생할 경우, 위탁가정에서 보호함.

○ 가능하면, 친인척이 위탁부모가 되어 아동을 보호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아동은 위탁가정에서 18-22개월 정도 보호된 후 원가정에 복귀되거나 입양되어 영구적으로 정착하게 됨.

○ 아동이 가정으로부터 분리되면, 주정부가 법적인 후견인이 되며, 소년법정은 아동학대로 인해 부모로부터 격리된 아동의 사례를 6개월마다 검토할 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음.

○ 부모가 법원에서 명령한 아동보호서비스 참여를 이행하지 않거나 양육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친권박탈의 절차를 진행함. 또한 아동학대 전담 경찰배치 및 공공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경찰서 상주를 통해 아동학대에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 워싱턴 DC의 경우, 주정부의 행정체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경찰, 법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워싱턴 DC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해 주정부 차원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아동 및 가족서비스기관(Child and Family Service Agency: CFSA)'임.[5)]

○ CFSA의 주요업무는 아동학대, 가정위탁, 입양, 아동과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지원임.

○ 워싱턴DC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이 매우 긴밀하게 연계를 맺고 있어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

5) 노충래 외 2인, 위의 연구보고서, 13면

<그림 2> 워싱턴 D.C.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서비스 제공 체계[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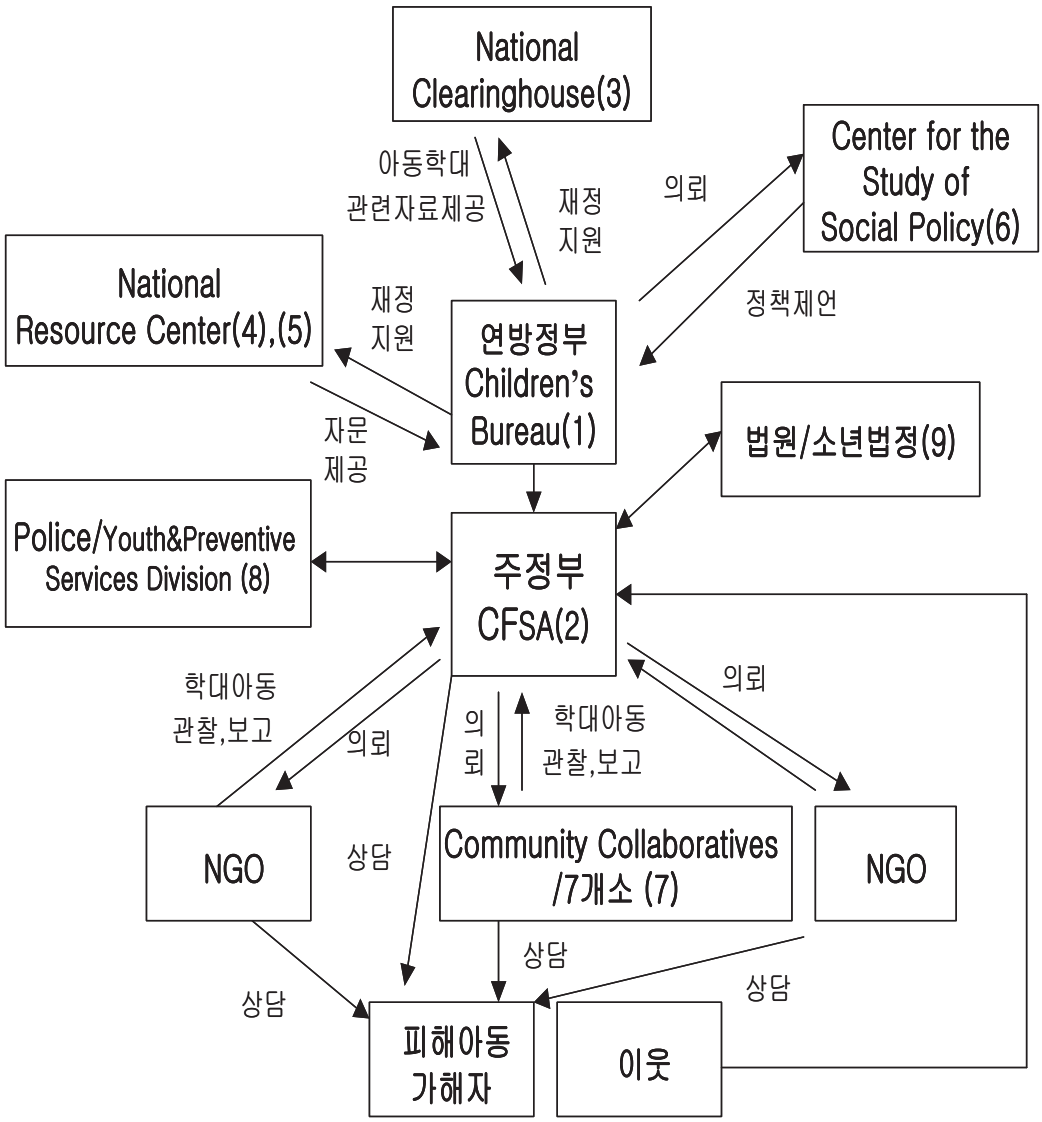

6) 김혜영, 한·미·일 아동보호서비스 제도에 대한 비교연구, 동아시아일본학회, 일본문화연구 52, 119-141면, 2014

제 3 장 아동학대 법제 분석

Ⅰ. 아동학대 법제 개관

1. 개 관

○ 미국에서 전통적으로 수정헌법 제14조에서 보호되는 자유권(liberty)의 하나로 부모가 가정을 이루고 양심에 따라 자녀의 교육을 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에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지켜왔음.[7)]

○ 이와 같은 불간섭주의는 결국 아동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낳았고 19세기 후반 Mary Ellen Wilson 사건을 계기로 하여 많은 비정부 기구들이 아동의 권리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됨.[8)]

○ 비정부기구들이 많이 설립되어 활동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연방정부는 특별한 기구를 설치하지 않다가 1912년에 이르러 연방정부 내에 아동국(Children's Bureau)을 설치함.

○ 1970년대 이후 형성된 아동학대와 관련한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1974년 '아동학대 예방 및 치유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국립아동학대방임센터를 설립하여 아동학대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임.

○ 연방정부는 이 후 '아동학대 예방 및 치유법'의 개정 등을 통해 아동학대 및 방임 발견, 치료, 예방을 위한 전국적인 협력 체계

7) 박형관,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사건 관련 각국의 법제 및 양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대검찰청 연구 용역, 2015
8) 박형관, 위의 보고서, 81면

구축, 효과적인 개입 방안에 대한 연구의 체계화,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지원을 통한 아동학대 및 방임 서비스 향상 등의 정책 목표를 설정[9]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법제적 지원을 마련함.

2. 아동학대의 정의

○ 각 주(state)마다 아동학대에 대해 정의를 달리하고 있기에 일치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려움.

○ 아동학대에 관한 연방법인 '아동학대 방지 및 대응에 관한 법률(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은 아동학대를 "아동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자가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혹은 성적으로 위해를 가하거나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10], 정서적 학대, 성적학대[11], 그리고 유기·방임의 네 가지 유형을 포함하고 있음.

---

9) 이충권, 피학대 및 방임 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미국의 아동복지 관련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10) '신체적 학대(physical abuse)'는 고의적으로 아동에 대해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신체적 학대에 관한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아동이 입은 위해가 고의적 혹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적인 쟁점임(Leslie J. Harris, & Lee E. Teitelbaum, Children, Parents, and The Law, Aspen Law & Business, 2nd ed., 2007, p.587

11) '성적 학대(sexual abuse)'는 일반적으로 아동에 대해 행하는 성적 행위로 정의됨. 성적 학대라는 법적 정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 빈도, 지속성 그리고 강도를 포함 한 광범위한 행위들이 고려됨(Leslie J. Harris, & Lee E. Teitelbaum, Children, Parents, and The Law, Aspen Law & Business, 2nd ed., 2007, p.594). John D. V.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744 N. E. 2d 659 (Mass. App., 2001)에서 항소법원은 계부의 의붓딸에 대한 성적 지향적인 행위는 비록 어떠한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학대'가 된다고 판시하였음.

Ⅱ. 주요 법률 분석

1. 아동학대 예방 및 치유법

○ ‘아동학대 예방 및 치유법(CAPTA)’은 아동학대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제정된 아동학대에 관한 최초의 연방법으로, 아동학대의 정의, 신고의무와 아동학대의 조사・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학대받은 아동의 그들의 부모에 대해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아동학대・방임 예방과 조치를 위한 주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 보조금 지원(Sec. 106), 아동학대・방임건의 조사와 기소 관련 주 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 보조금 지원(Sec. 107), 관련 지역 프로그램 보조 및 연구・프로그램 평가, 관련 정보 수집 등에 있어서의 연방 정부 역할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아동학대와 방임을 다루는 연방 기본법에 해당하며, 수 차례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가장 최근의 주요 개정은 2010년 CAPTA Reauthorization Act (CAPTA 재승인 법)임.

○ U.S. Code Title 42, Chapter 67에 개정 법등이 반영되어 집대성되어 있으며, CAPTA, Adoption Opportunities, AIAA 등을 포함하고 있음.

○ CAPTA의 주요 목차는 다음과 같음.

Section Ⅰ 아동학대 예방 및 치유법(CAPTA)
Title Ⅰ 일반 프로그램
Sec. 103 아동학대 관련 전국정보센터(National Clearing House)
Sec. 104 연구・보조 활동
Sec. 106 아동학대・방임 예방과 조치 프로그램을 위한 주 보조금
Sec. 107 아동학대・방임건의 조사와 기소 관련 주 정부 프로그램 보조금

Title Ⅱ 아동학대・방임 예방을 위한 지역 기반 보조금
Sec. 201 목적과 권한
Sec. 202 보조금 수급 자격
Sec. 203 보조금액
Sec. 204 신청
Sec. 205 지역 프로그램 요건
Sec. 206 수행 평가

Section Ⅱ: 입양 기회[12)]
Sec. 204 규제받지 않는 입양 행위 조사와 보고

Section Ⅲ: 유기아동 부조법
「The Abandoned Infants Assistance Act, AIAA」

Sec. 101 지역 프로그램 설립
Sec. 102 평가, 연구 및 보고

○ 제정 시 CAPTA는 아동학대(child abuse)를 “아동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자가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혹은 성적으로 위해를 가하거나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유기・

12) Adoption Opportunities, 1978 Child Abuse Prevention and Adoption Reform Act(아동학대예방 및 입양개혁법) 개정 반영

방임[13]의 네 가지 유형을 포함하였으나, 2010년 개정으로 학대와 방임에 관한 정의조항을 삭제함.

○ 아동학대의 예방, 확인 및 대응에 관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기관인 '국립 아동학대 및 방임정보센터(National Clearinghouse on Child Abuse and Neglect Information)'를 설립하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담당.

○ 연방정부 복지부(Department of Human Services, DHS)[14] 내에 국립아동학대 및 방임센터(National Center on Child Abuse and Neglect, NCCAN)를 설립하여 아동학대의 발견, 예방, 치료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관련통계 발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목표 설정 등의 역할 수행함.

---

13) '아동방임(child neglect)'은 성인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버리는 행위, 즉 부모나 보호책임이 있는 자가 아동의 양육을 거부함으로써 그 아동이 사회적 고아가 되는 것이라고 정의됨. 즉 아동이 필요로 하는 의식주와 교육과 건강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말할 수 있음. 이에 관하여 대부분의 소년법원은 1975년의 '모델가족법원법(Model Family Court Act 1975)'을 참조하여 판결을 내리고 있음. 1975년에 미국의 건강교육복지부(U.S.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HEW - 이 부서는 1953~1979년까지 존속된 부서로, 현재는 미국복지부<U. S.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DHS>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에서 공표한 미국의 '모델가족법원법' § 2(19)에서 방임된 아동 (neglected child)을 다음과 같이 정의함. (ⅰ) 그의 부모, 후견인, 그 밖의 다른 보호자로부터 유기되었거나, (ⅱ) 그의 부모, 후견인, 또는 그 밖의 다른 보호자로부터 신체적 학대를 받았거나, 혹은 부모, 후견인이나 그 밖의 다른 보호자의 잘못이나 습관, 그들의 방임이나 제공하려면 하면 제공할 수 있었을 때 그에 대한 거부로 인하여 그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적절한 보호나 통제가 없거나, (ⅲ) 그의 부모, 후견인, 또는 그 밖의 보호자는 아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ⅳ) 위법하게 보호나 입양을 위해 머물러 있던 자, (ⅴ) 앞에서 언급한 것들이 보호나 감독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을 때의 아동을 칭함.

14) DHS는 시 또는 county 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기관으로, 신고에 대한 조사를 담당할 뿐만아니라, 긴급을 요하는 때에 부모의 동의 없이 일시보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 단 州마다 명칭은 다르지만, 캘리포니아(California)주와 일리노이(Illinois)주 등에서와 같이 '복지부(Department of Human Services: DHS)'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州가 많음.

○ 연방보조금 지급으로 각 주의 학대신고체계를 확대 및 정비를 지원하고 있음.

2. 1992년 아동학대, 가정폭력, 입양 및 가족 서비스법[15] 개요

○ '아동학대 예방 및 치유법(CAPTA)' '가정폭력예방과 서비스법(Family Violence Prevention and Services Act)'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제정됨.

○ 아동학대와 방임과 관련한 문화적 차이, 아동학대 사례와 관련하여 문화적으로 예민할 수 있는 절차, 아동학대 및 방임과 문화적 차이와의 관계, 지역사회에 기반한 학대아동 예방교부금을 통해 주 정부의 학대아동 예방활동을 지원 등의 내용을 반영함.

3. 1996년 아동학대 예방 및 치유법(CAPTA) 개정안

○ '아동학대 예방 및 치유법(CAPTA)'을 개정 및 재승인.

○ 국립 아동학대 방임센터(NCCAN)를 폐지하고 아동학대방임사무소[16] 설치.

○ 유기된 신생아 혹은 아동의 사망 혹은 심각한 신체 부상에 부모가 책임이 있을 시 해당 아동에 대한 친권 박탈 절차를 신속히 처리.

○ 아동학대의 최소 정의에 사망, 심각한 신체적 혹은 심리적 피해, 성적 학대, 혹은 즉각적인 상해의 위험을 포함.

---

15) Public Law 100-294

16) DHHS내 아동가족청 산하 아동국(Children's Bureau) 내 설치됨. '아동학대 및 방임 사무소(Office of Child Abuse and Neglect, 아래에서는 'OCAN'이라 약칭한다)'는 아동학대문제에 대한 전국적인 연구, 평가, 기술원조, 자료 수집 등을 담당함.

○ 의학적 조치와 관련하여 부모가 종교적 믿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인정.

○ 지역사회 기반 가족자원 및 지원 교부금 프로그램, 입양기회법, 유기아동 지원법, 아동학대 피해자법, 아동정의법 교부금, 실종 아동 지원법을 지속.

○ 아동 사망 검토 패널, 혹은 위탁보호 검토 패널 등 각 주에 적어도 3명 이상의 시민 검토 패널 설립을 위한 연방 교부금 지원을 규정함. 패널은 주 정부 및 지방 기관의 정책과 절차를 검토 수행.

- 필요 시, 주 정부의 아동보호서비스 시스템이 VI-E에 의거하여 만든 위탁보호와 입양 프로그램과 얼마큼 연계되어 운영되는 지, 아동 사망 및 사망 위험이 높은 사례를 검토하여 기관들이 효과적으로 아동보호 책임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목적.

제 4 장 아동학대예방 제도

Ⅰ. 아동학대신고제도

○ 미국은 1962년 제정된 아동학대신고법을 통해 주민에게 아동학대 또는 방임을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복지국이나 경찰에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권유한 이래로 아동 학대의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음.

○ 특히 1974년 아동학대예방법은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와 예방을 위한 연방정부의 재정을 '아동학대신고의무법(Mandatory Child Abuse Reporting Law)'을 제정한 주에만 배분하기로 명시하였고 이에 1974년 이후 미국의 모든 주는 아동학대신고의무법을 제정·시행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각 주는 '아동학대 신고법(Child Abuse Reporting Law)'을 제정하거나 '아동보호법(Child protective Services Law')내에 아동학대 신고 및 개입체계의 법적인 근거를 만들고 증가하는 아동학대 문제에 대처하고 있음.

○ 주법(State Laws)에서는 신고의무자(또는 일반인)에 대한 규정, 신고해야 하는 사항, 우선 적인 정보사항,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신고절차에 관련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주법은 연방정부의 법률보다 더욱 포괄적이고 구체적임.

1. 신고의무자 규정

○ '아동학대 예방 및 치유법(CAPTA)'은 각 주정부마다 아동학대신고의무자를 규정하는 법규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다만 이 법은 구체적인 신고의무자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주마다 자율적으로 신고의무자를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대부분의 주에서는 '신고법(Reporting Laws)'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24시간 핫라인(hot line)을 개설하고 신고에 응할 체계를 갖추게 되었음.

○ 미국에서의 신고의무자는 주별로 상이한데, 신고의무자는 학대나 성폭력이 의심될 때 자신의 전문적 판단 등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신고할 의무가 부여됨.

○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일반인에게는 신고의 자유 및 자유재량권이 있음.

○ 미국의 18개 주에서는 모든 시민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아동 및 청소년을 상대하는 모든 전문가들, 즉, 의사 및 병원 종사자, 심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복지시설 종사자, 교사와 교육기관 종사자, 보육시설 종사자, 법집행담당자, 법률상담 관련자 등이 신고의무자로 규정되고 있음.[17)]

○ 일부 주에서는 수의사, 동물통제국직원(animal control officer), 상업영화 종사자 및 사진제작자, 약물중독 상담가, 소방관, 가정폭력 상담가, 성직자를 포함하기도 함.

○ 34개 주는 신고법에 신고의무 면책대상자(privileged communication)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직무상 대화내용의 비밀을 보장해야 하는 경우(confidential communication)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변호사와 고객', '성직자와 (고해)신도' 임.[18)]

17) Children's Bureau, Child Welfare Informationa Gateway, 2015.
18) 양혜원, 아동학대와 부모의 친권에 관한 문제-영미제도의 시사점-, 가족법연구 제

- 단, 이때에도 단순한 신도와 성직자의 대화내용이 아니라 고해나 영적 지도상황에 한하여만 예외로 보고 있음. 뉴햄프셔, 노스 캐롤라이나, 로드아일랜드, 텍사스, 웨스트버지니아 주에서는 성직자, 신도에 대한 면책을 인정하지 않음.
- 몇몇 주에서는 정신건강전문가와 환자, 의사와 환자 간의 면책권을 인정하기도 함.

2. 신고의무 불이행시 제재규정 및 면책규정

○ 미국에서는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일정기간동안 구금형에 처하거나, 벌금형을 부과하거나, 손해배상 등 피해 아동 및 청소년에게 야기된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와 '의도적으로 혹은 알면서도 잘못 신고한 경우' 두 경우 모두를 처벌하고 있음.

○ 미국의 약 46개 주에서는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제재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33개주는 알면서도(knowingly), 알거나 알았어야 함에도 (knows or should have known), 의도적으로(willfully) 신고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며, 일부 주에서는 의도적으로(intentionally), 고의적으로(purposely) 신고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19)]

○ 35개 주에서는 신고하지 않은 경우 경범죄로 처벌하고, 아리조나주, 일리노이주, 괌 등에서는 중범죄로 처벌하고 있음.

27권 1호, 한국가족법학회, 2013, 245-276면.

19) 양혜원, 위의 논문, 256면.

○ 신고의무자가 잘못 신고한 경우, 31개 주에서는 알면서도(knowingly), 의도적으로(willfully) 잘못 신고한 경우에 처벌한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경범죄로 처벌하나, 9개 주에서는 특정 상황의 허위신고는 중범죄로 처벌함.

○ 신고의무자를 위한 보호 장치로써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했다는 사실이 부당하다는 사유로 신고자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모든 주의 신고법에는 신고의무자에 대해 소추면제를 명시하고 있음.

○ 이러한 면제조항은 신고의무자가 허위신고가 아닌 선의에서 신고한 경우에 한해 적용됨.

3. 신고 및 조사절차

○ 신고의무자는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핫라인이나 경찰에 신고하게 되는데, 신고내용은 아동과 부모에 대한 신상정보, 학대나 방임, 폭력의 의심이 되는 내용 등이 해당됨.

○ 일반적으로 신고 후 24-28시간 내에 조사를 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으며, 신고접수 후 30-90일 이내에 조사결과와 보호조치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대부분의 주에서 신고접수 및 조사와 관련된 자세한 지침을 담은 메뉴얼을 업무담당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이름, 연령, 폭력상황의 정도, 원인, 성격 등의 내용과 더불어 가정 내 다른 자녀들에 대한 조사를 함께 하도록 명시함.

○ 이러한 매뉴얼은 조사자들이 아동이 처한 위험 정도, 임시보호조치의 필요 여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신체적

폭력이나 성적 폭력의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년법정으로 인계해야 함.

4. 미국의 각 주별 신고 기준 및 절차

(1) 신고 의무자 범주

○ 대체로 각 주에서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5대 신고의무자로 의료기관 종사자(Health care professionals), 정신건강 전문가(Mental health professionals), 사회복지사(Mental health professionals), 교육기관 및 보육시설 종사자(Education/child care professionals), 법집행기관 종사자(Law enforcement professionals)를 정하고 있는데, 이에 더하여 각 주별로 신고의무자를 정하고 있음.[20)]

- 신고의무자로서는 아동관련 종사자(알라바마주), 가정폭력・성폭력・약물중독 상담자(알라스카주), 부모・성직자・교직자・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담당자(아리조나주), 검사・판사・보건복지부 종사자・위탁부모(알칸사스주), 아동보호종사자(코네티컷주) 등이 있음.

- 켄터키주, 메릴랜드주, 미시시피주, 뉴저지주 등의 경우에는 모든 시민을 신고의무자로 정하고 있음.

- 성직자와 신도의 경우, 변호사와 고객의 경우에는 면책특권을 부여하고 있는 주도 있음. 캘리포니아주, 콜로라도주, 메사추세츠주, 미네소타주, 몬타나주, 뉴햄프셔주, 뉴멕시코주 등에서는 성직자와 신도의 경우에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있고, 알라바마주, 플로리다주에서는 변호사와 고객의 경우에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있음.

20) Children’s Bureau, Child Welfare Informationa Gateway, 2015.

- 아리조나주, 알칸사스주, 미시건주, 미주리주, 네바다주, 델라웨어주, 아이다오주, 켄터키주, 루이지애나주, 메릴랜드주에서는 성직자와 신도 및 변호사와 고객의 경우 모두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있음.

주별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21)]

개별 주	신고의무자
메사츄세스	5대 신고의무자 + 약물 및 알코올 상담가, 보호관찰 및 가석방 담당자, 법원 행정직 미판사, 소방공무원, 성직자, 교직자
미시시피	5대 신고의무자 + 모든 시민, 변호사, 성직자
미주리	5대 신고의무자 + 아동보호 관련 시설 종사자, 기독교, 보호관찰관 및 가석방 담당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성직자
뉴저지	모든 시민
네브라스카	의료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사, 교육기관 및 아동시설 관계자, 모든 시민
뉴햄프셔	5대 신고의무자, 성직자, 교직자
아리조나	5대 신고의무자 + 부모, 아동보호 및 치료담당자, 성직자 및 교직자,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담당자
델라웨어, 콜롬비아, 아이다오, 미네소타	5대 신고의무자

21) 이정념, 미국에서의 아동학대신고의무제도, 경찰법연구 제8권 2호, 경찰법학회, 217-236면, 2010

개별 주	신고의무자
알칸사스	5대 신고의무자 + 검사, 판사, 보건복지부 종사자, 가정폭력 쉼터 종사자와 자원봉사자, 위탁부모, 법원이 임명한 특별지원자, 성직자 및 교직자
캘리포니아	5대 신고의무자 + 소방관, 동물통제국 직원, 상업작 필름 및 사진 제작자, 성직자, 법원이 임명한 특별지원자
코네티컷	5대 신고의무자 +약물중독・성폭력・가정폭력 상담자, 다학제간 아동보호팀, 상업적・개인적 필름 제작자
알라스카	5대 신고의무자 +약물중독・성폭력・가정폭력 상담자, 다학제간 아동보호팀, 상업적・개인적 필름 제작자
아메리칸 사모아	의료기관 종사자, 정신건강 전문가, 사회복지사, 교육기관 및 보호시설 종사자, 의료검사 전무가 및 검시관, 교직자
아리조나	5대 신고의무자 +부모, 아동보호 및 치료 담당자, 성직자 및 교직자,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담당자

(2) 신고기준 및 제재규정

○ 각 주에서 정하고 있는 아동학대신고기준으로는 폭력사실의 인지 또는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을 때, 폭력의 결과로 보여 지는 증거가 관찰될 때, 믿을만한 사유가 있을 때, 폭력사실의 인지 또는 믿을만한 사유가 있을 때, 폭력사실의 인지 또는 목격했을 때 등을 들고 있음.

○ 구체적으로 학대의 유형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신고기준은 다음과 같음.

미국의 성범죄 신고기준[22)]

신고기준	개별 주
폭력사실의 인지 또는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을 때	알라바마, 캘리포니아, 미시건, 미시시피, 미주리, 뉴맥시코, 알라스카, 아메리칸 사모아, 알칸사스, 괌, 켄사스, 델라웨어, 콜롬비아, 플로리다, 아이다오, 메인, 켈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몬타나 등
폭력의 결과로 보여지는 증거가 관찰될 때	아메리칸 사모아, 알칸사스, 콜로라도, 미주리, 네브라스카 등
믿을만한 사유가 있을 때	메사추세스, 네브라스카, 뉴햄프셔, 뉴저지 등
폭력사실의 인지 또는 믿을만한 사유가 있을 때	네바다, 미네소타 등
폭력사실의 인지 또는 목격했을 때	캘리포니아, 괌, 루이지애나 등

○ 각 주에서는 신고의무자들이 신고를 불이행한 경우 나름의 처벌기준에 따른 제재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대체로 이를 경범죄로 판단하고 있음.

○ 다만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자가 재범인 경우, 아동이 사망한 경우, 피해정도가 중한 범죄사건인 경우 등은 신고불이행 행위를 중범죄로 다루고 있음.

22) 이정념, 위의 보고서, 227면

- 알라바마주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인지하였으나 신고의무를 이행 하지 않은 것을 경범죄로 보고 6개월 이하의 구금 또는 50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

- 아리조나주의 경우에는 이를 1급 경범죄로 판단하지만, 피해정도가 중한 범죄사건인 경우에는 6급 중범죄로 처벌하며 있음.

- 미네소타주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인지하였으나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신고의무자가 부모 또는 보호자인 경우 아동이 사망하였다면 신고의무불이행 행위를 중범죄로 다루고 있음.

Ⅱ. 아동보호서비스를 통한 아동학대예방

○ 아동학대 관련법을 근거로 법원은 강한 권력을 가지고 부모에게 학대행위자 치료명령 등 다양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공적·사적 사회복지서비스 기관과의 연계에 의해 아동학대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을 위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 아동보호서비스는 주정부의 아동 및 청소년 보호서비스 관련부서와 이 부서로부터 위탁을 받은 지역사회 민간기관들(community agencies)의 협력체계로 이루어지는 데, 주정부 관련부서는 주로 성폭력에 관련된 신고접수, 조사 및 사정, 보호조치의 결정 등을 담당하는 한편 상담, 치료, 사례관리 등은 민간기관이 담당하고 있음.

1. 연방정부의 아동보호서비스 행정체계

○ 연방정부 아동 청소년 및 가족부(ACYF: Adminstration on Children, Youth and Families)내의 아동국(Children's Bureau)에서 아동학대

및 방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에 관련하여 정책 수립, 주정부에 재정 지원, 주정부의 정책 및 프로그램 등 실천현황을 조사 및 평가, 아동학대에 대한 전국적 홍보 업무를 수행함.[23)]

○ 아동보호에 있어 연방정부의 가장 큰 역할은 주정부가 아동보호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이를 위해 연방정부는 아동학대 및 방임에 관한 연방법안을 제정하고, 전국적인 정책을 수립함.

- 또한 아동학대 및 방임에 관해 주정부가 실천할 수 있는 광범위한 지침을 제시하고 주정부에 재정을 지원하거나 주정부가 아동학대 및 방임에 관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현황을 조사·평가함.

- 평가결과에 따라 연방정부에서 주정부에 지원하는 재정의 규모를 결정함.

- 연방정부는 또한 주정부가 아동보호사업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 아동복지자원센터(National Child Welfare Resource Center)를 운영함.

- 10개에 이르는 자원센터(Resource Center)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주요 업무는 가족중심 실천, 입법 및 사법적 이슈, 조직개선, 위탁보호 영구계획, 아동복지정보기술, 특수 필요 아동입양, 청소년 서비스, 아동학대, 유기아동지원, 지역사회에 기초한 가족자원지지 등임.

- 또한 연방정부는 전국정보센터(National Clearinghouse)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전국아동학대 및 방임 정보센터

23) 박주영, 미국의 친권상실제도에 관한 검토-아동학대사례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비교사법 제1권 1호, 2009, 1-38면.

(NCCAN: National Clearinghouse on Child Abuse and Neglect Information)와 전국입양정보센터(NAC: National Adoption Information Clearinghouse) 등의 두 곳으로 구분되고 예산은 연방정부로부터 전액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음.[24)]

- 정보센터(Clearinghouse)에서는 아동학대와 방임, 입양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 가공하여 전문가와 일반인에게 보급하며 전문가들을 위한 매뉴얼을 작성함.

- 연방정부 건강 및 인간 서비스 국(HH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내의 아동 및 가족부(ACF: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는 아동 및 청소년과 가족을 위한 포괄적인 지원프로그램을 기획, 관리, 조정하고 아동 및 가족부(ACF)내에 아동 청소년 및 가족부(Administration for Children, Youth and Families)가 있어 아동보호정책을 추진하며 그 산하에 있는 아동국(Children's Bureau)에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구체적인 업무를 지원함.

○ 아동과 가족을 위한 연방정부차원의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도록 AFC는 전국을 10개의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 지역마다 지역사무소를 개설하고 관할지역의 주 정부 및 관련기관에 아동 및 가족부처(ACF)의 정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2. 주정부 아동보호 서비스 행정체계

○ 아동보호를 위해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법을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각 주의 특성에 맞는 법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아동보호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음.

24) 박주영, 위의 보고서, 30면.

- 특히 아동학대 및 방임에 개입하기 위해 아동보호서비스(Child Protective Service) 기관을 주정부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아동보호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 워싱턴 D.C.의 아동 및 가족서비스기관(Child and Family Service Agency, CFSA)은 아동학대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 아동격리, 가정 위탁, 지역사회 민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담당함.

○ 아동학대 신고는 24시간 긴급전화(hot-line)를 운영하여 즉각적으로 대처하고, 신고접수만 받는 인력들이 별도로 배치되어 있음.

○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은 응급사례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접수 후 30일 이내에 학대 여부를 조사하여 아동학대 여부를 판정하도록 정하고 있음.

- 부모로 부터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격리 조치를 취하는데 격리가 결정되면 24시간 이내에 법원을 방문해야 함.

- 격리는 필요하지 않지만 가족전체가 지원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서비스 제공을 실시함.

워싱턴 D.C. CFSA의 각 부서별 기능[25)]

임상전문가 대표 사무국 (Office of the Deputy Director for Clinical Practice)	• 심리치료사, 소아과 의사, 약물전문가, 교육전문가, 정신건강 전문가 등 관련분야 전문가 33명으로 구성된 부서 • 아동에 대한 서비스가 얼마나 잘

25) 김혜영, 위의 보고서, 123면.

	진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아동보호서비스전분가 (CPS Worker)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
훈련사무국 (Office of Training Services)	• 직원에 대한 훈련을 담당하는 부서 신규채용 된 아동보호서비스전문가는 4개월 총 80시간 훈련 기존 직원은 매년 40시간 씩 보수교육
프로그램운영 대표사무국 (Office of the deputy Director for Program Operation)	• 신고접수, 현장조사, 입양, 위탁가정보호, 위탁가정 모집 및 훈련, 사례관리 등 담당부서 슈퍼비전 체계 5명의 아동보호서비스전문가 당 1명의 슈퍼바이저 배정 4~5명의 슈퍼바이저 당 1명의 프로그램 매니저 배정 4명의 프로그램 매니저 당 1명의 행정담당자가 배정
법률고문사무국 (Office of the General Counsel)	• 44명의 변호사가 상주하면서 아동격리 및 배치와 관련해서 처리해야 할 법적절차, 소송 등 지원업무
모니터링・자격대표사무국 (Office of the Deputy Director for Licensing Monitoring)	• 협력관계에 있는 민간기관의 서비스를 모니터하고, 위탁가정에 자격을 부여하는 업무

- 아동 및 가족서비스기관(CFSA)은 현재 약 3,200명의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으며, 56%는 각자 가정에서 44%는 가정 외부에서 보살핌을 받고 있음.

제 5 장 시사점

Ⅰ. 아동학대 신고의무규정의 구체화

○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에서는 초·중등학교의 교사, 의료인, 아동장애인보육, 모자복지시설 종사자, 모자복지 및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아동복지지도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음.

- 법으로 신고의무자를 규정해 놓은 상태이지만,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은 낮은 편으로 2009년 전체 신고자 중 비신고 의무자의 신고율이 70%가 넘는 반면,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은 31.8%에 그치고 있음.[26)]

- 「아동복지법」이 신고 의무와 의무 불이행에 따른 처벌을 함께 규정하지 못하고, 의무만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선언적 조치에 그치고 있음.

○ 미국에서는 체계적인 시스템에 따라 아동과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이들의 피해사실을 보다 빠르게 발견할 수 있는 자로 신고의무자를 지정하는 한편, 신고의무 자들이 그 의무를 충분히 행할 수 있도록 면책 및 보호 장치 등을 제공하고 있음.

- 또한 미국의 경우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충실히 하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신고의무자들을 위한 전용 신고 전화를 별도로 두어 업무의 효율을 꾀하고 있는데, 이는 신고의무자들의 신고는 아동학대의 신빙성을 더 해주기 때문임.

---

26) Children's Bureau, Child Welfare Informationa Gateway, 2015.

- 또한 신고의무자들 가운데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법적 제재규정 및 허위신고시의 제재규정 등을 명시하고 있음.

○ 사회복지사, 교사, 의료인 등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인 만큼 신고의무자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 도출 및 법적 근거 마련 등이 절실히 필요함.

Ⅱ. 공공·민간 기관의 아동학대예방 협조

○ 미국 아동학대예방 체계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역할이 명확히 분리돼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음.

○ 공공기관은 재정 지원과 서비스 중복·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주로 담당하면서 아동학대 사례가 발생하면 신고접수 현장조사 보호조치 등을 담당하고 민간기관은 차별화된 상담과 치료 프로그램 개발로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원의 전문성 향상과 유지에 집중하고 있음.[27)]

- 미국에서는 SCR(State Central Registry)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고, 이 사례는 피해 아동의 주소지에 있는 아동학대 관련 공공기관인 CPS(Child Protective Service)로 이관됨.

- CPS에서는 자정까지 신고전화를 받으며,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는 경찰이 신고전화를 접수하고 현장에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과 사회복지사가 함께 현장조사 동행함.

- 우리나라는 아동학대의 신고접수, 조사, 상담, 사례종결까지 전 과정을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맡고 있음. 이

27) 이충권, 위의 보고서.

때문에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아동학대자를 강제한 상담사가 오래지 않아 아동 학대자인 부모를 상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함.[28]

- 또한 우리나라 아동학대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577-1391로 통일돼 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접수함.

- 전국 44개 아동보호전문기관 중 2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민간기관으로 전문기관의 요청이 있어도 실제 현장에서는 경찰의 협조를 끌어내기 어려워 전문기관 상담원만 출동하는 경우가 빈번함.

○ 2010년 이루어진 현장조사 1만1520회 중 경찰이 동행한 횟수는 195회로, 전체 1.6%에 불과함.[29]

-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이 아동학대 예방에 있어서 공공기관과 다양한 민간기관이 협력하면서 각 영역의 명확한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28)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30627.22006195526
29)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30627.22006195526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김혜영, 한・미・일 아동보호서비스 제도에 대한 비교연구, 동아시아 일본학회, 일본문화연구 52, 119-141면, 2014.

노충래 외 2인, 아동학대 조기발견체계 구축을 통한 아동학대 발생방지 방안 마련, 법무부 연구용역과제, 2012.

박주영, 미국의 친권상실제도에 관한 검토-아동학대사례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비교사법 제1권 1호, 2009, 1-38면.

박형관,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사건 관련 각국의 법제 및 양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대검찰청 연구 용역, 2015.

양혜원, 아동학대와 부모의 친권에 관한 문제-영미제도의 시사점-, 가족법연구 제27권 1호, 한국가족법학회, 2013, 245-276면.

이정념, 미국에서의 아동학대신고의무제도, 경찰법연구 제8권 2호, 경찰법학회, 217-236면, 2010.

이충권, 피학대 및 방임 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미국의 아동복지 관련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국외문헌>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Administration on Children, Youth and Families, Children's Bureau. (2015). Child maltreatment 2013.

Leslie J. Harris, & Lee E. Teitelbaum, Children, Parents, and The Law, Aspen Law & Business, 2nd ed.,2007, p.587.

Public Law 100-294.

Children's Bureau, Child Welfare Informationa Gateway, 2015.

<인터넷 자료>

http://www.acf.hhs.gov/programs/cb/focus-areas/child-abuse-neglect 참조.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30627.22006195526